

의안번호	281
발의일자	2023. 5. 31.
회부일자	2023. 6. 2.

제340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농수산위원회
2023. 6. 19. (월)

『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

농 수 산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진영

『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남영숙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관상어산업은 종자 생산, 관상어 용품 제작, 사육·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신 성장산업으로, 경상북도가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안함

3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3조~제4조)
- 관상어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(안 제6조)
-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을 규정함(안 제7조~제8조)

4. 관련법령

-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
- 예고기간 : 2023. 6. 5. ~ 6. 13. 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68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가. 본 제정 조례안은

- 경상북도 관광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신 성장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

용어의 정의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관상어”(觀賞魚)란 「관광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.
2. “관광어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⇒ 상위법에 따라 “관상어” 및 “관광어산업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임

- 안 제3조는 관광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4조는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
 - ⇒ 상위법에서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5조는 시·군과 어업인 및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
 - ⇒ 관광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, 시설 등 초기투자비용이 높으므로 관련 산업 선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6조는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
 - ⇒ 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즈니스센터가 올해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준공 될 예정으로, 센터의 성공적인 출범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- 안 제7조는 관광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
 - ⇒ 아직까지 관광산업이 도민에게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않으며,

관련 산업의 중요성 또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여, 본 조문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

- 안 제8조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음
 - ⇒ 「경상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신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상어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, 관련 법령도 이미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
- 관상어산업은 사육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,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7~8%씩 성장하고 있으며, 현재도 약 50조원으로 추산되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, 우리나라도 시장규모가 5천억을 넘어서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한 관련 산업 선점의 필요성이 인정됨
- 경상북도에서도 반려어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시대를 대비하고 낙동강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접목하여 미개척분야를 선점하고자, 내수면관상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으로 조례 제정의 시의성 또한 인정됨
- 조례 제정과 함께 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관상어산업의

선점을 대내외에 알리고, 관광자원화 및 관상어산업 클러스터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-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참고

경상북도내수면관광어비스니스센터 개요 [해양수산과]

○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(5년)
- 총사업비 : 190억원(국비 95, 도비 95)
- 사업규모 : 부지 14,000㎡(4,235평), 건축 연면적 4,538.31㎡(1,373평)
- 사업내용 : 관광어 R&D·창업·교육센터, 전시·체험시설 등 건립
- 세부시설
 - (연구홍보시설) 1,330㎡ - 사무실, 전시·체험시설, (창업지원시설) 559㎡ - 임대사무실 5실, 교육실
 - (후생복지시설) 370㎡ - 종자생산·관리실 (공용면적) 2,279.31㎡ - 화장실, 기계·전기실 등

○ 사업대상지



※ 추진현황 : 착공(2022. 12. 28.), 현재공정(터파기 공사), 준공(2024. 6. 27.)